'21년 귀속 **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** 가이드

- Ⅰ. [홈택스]파생상품 양도소득 전자신고 안내 ·· 1
- Ⅱ. [손택스] 파생상품 양도소득 전자신고 안내 · · 20

신고 전 유의사항

- ✓ 국내와 국외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'국내'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✓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<u>①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·</u>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프로그램과 <u>②엑셀 프로그램</u>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.
- ✔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에서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료의 적정 여부는 이용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☆ 손택스 이용 시 모두채움된 양도차익 등 기재내용이 실제 양도차익 등과 상이할 때에는 홈택스(PC)를 이용해 수정· 신고바랍니다.(손택스는 수정불가)
- ✓ 주식워런트증권(ELW)을 계좌이체 등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✔ 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로부터 비거주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 - 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(최근 3년)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

민원24(www.minwon.go.kr) > 자주찾는 민원 > 출입국사실증명 > 로그인(비회원 로그인 가능) > 개인(외국인등) > 증명서 발급 > 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 > 홈택스 업로드

I. (홈택스)파생상품 양도소득 전자신고 안내

- (1. 증권사 HTS)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양도소득세
- \rightarrow 6. 확정신고 작성 \rightarrow 7. 기본정보 \rightarrow 8.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- → 9. 세액계산 및 확인 → 10. 신고서 제출 → 11 . 세금 납부하기

1 등권사 HTS 또는 모바일 웹 배너 등

• 증권사의 배너 또는 공지사항에서 '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'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.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안내

■ 신고대상 :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

■ 신고·납부기간 : 2022.5.1.(일)~5.31.(화)

■ 전자신고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손택스(모바일)

■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26번

■ 신고·납부방법:「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*」참고

* 홈택스 > 자료실(화면하단 가운데) > 검색창에서 '파생상품'으로 검색

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※ 증권사마다 안내문구나 표현방식은 다를 수 있음

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



로그인(회원 또는 비회원)



-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^{*}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(비회원로그인 시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불가)
 - * 카카오톡, 통신사 인증서(PASS), 페이코, 삼성패스, KB모바일 인증서



4 신고/납부 선택



양도소득세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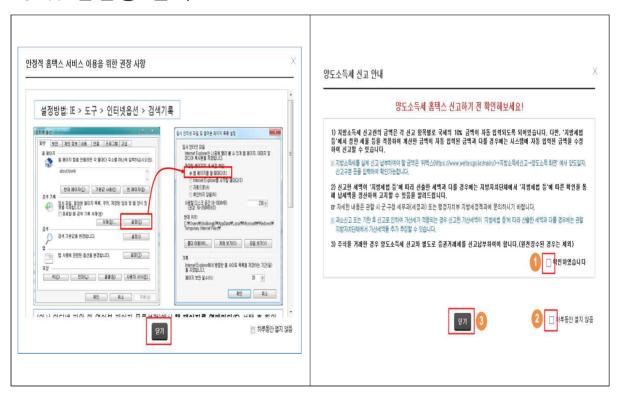
5



6 확정신고 작성



6-1. 팝업창 닫기



7 기본정보 입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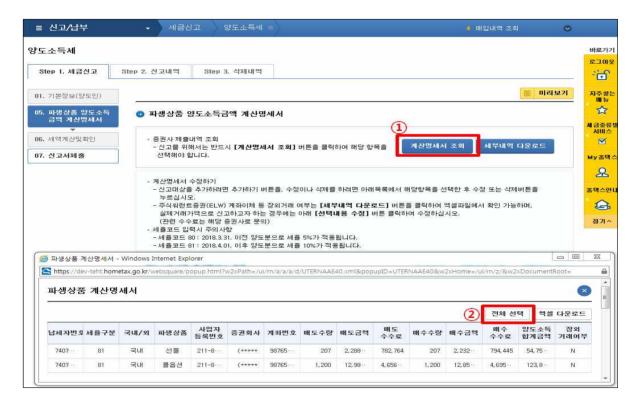
- ① 국내/국외 구분에서 '국내'로 선택한 후 (2017년 양도분부터는 국내.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.)
- ② 양도자산을 '파생상품'으로 선택합니다.
- ③ 연도는 2021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.(월은 자동선택 됩니다.)
 - 화면 중앙은 신고에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.
- ④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- ⑤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8-1 (중요) 계산명세서 조회

8

- ①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[계산명세서 조회]를 클릭하여 신고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.
- ② 계산명세서 조회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신고대상 및 금액 등을 확인 후 전체 선택을 클릭하면
 -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신고대상으로 수록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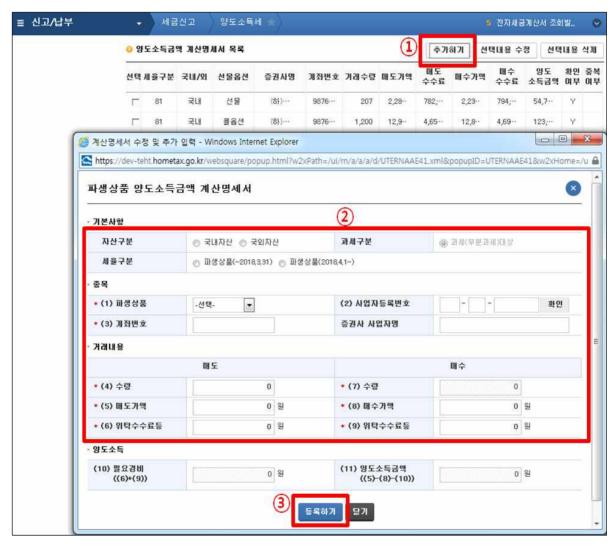


※ 증권사 제출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[세부내역 다운로드]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.

8-2 추가.수정.삭제하기

가. 추가하기

- 증권사에서 제출한 신고대상 이외에 추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- ①추가하기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추가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②입력한 후 ③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


나. 수정하기

-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파생상품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
 -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①(☑)클릭 후 ②선택내용 수정 ③수정할 내용 입력 ④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


※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삭제하기

-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파생상품 중에 삭제할 사항이 있는 경우
 -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①(☑)클릭 후 ②선택내용 삭제 ③삭제 '확인'을 클릭합니다.



8-3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



-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고 [저장 후 다음이동]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 - ※ 화면이동전 중복신고에 대한 오류검증이 이뤄집니다.

9 세액계산 및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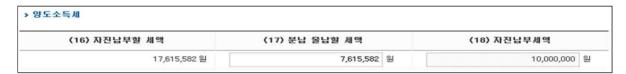


- ①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'등록하기'를 클릭 후
- ② '저장후 다음이동'을 클릭합니다.
- ※ 기본소득공제 : 국내·외 파생상품 통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

10 신고서 제출



- ①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: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



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: 그 세액의 50%이하의 금액



②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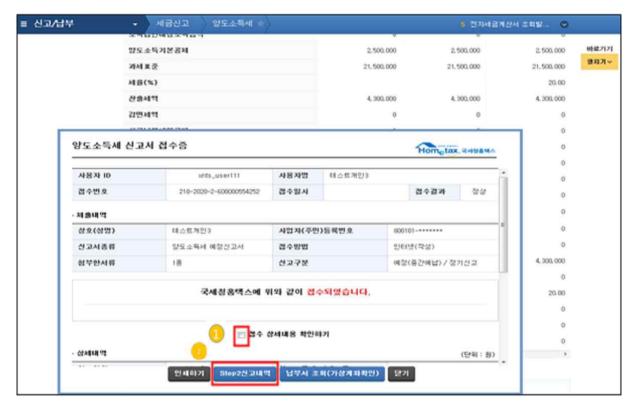


③ 신고서 접수 완료



11 세금 납부하기

11. 세금 신고내역 선택



① 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 클릭 후 ② Step 2 신고내역 선택

11-1.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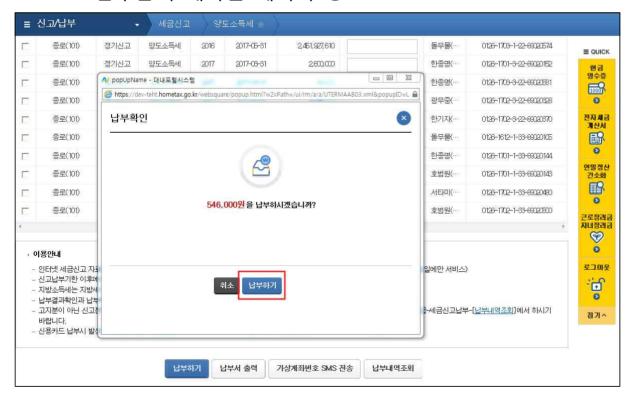


11-2. 납부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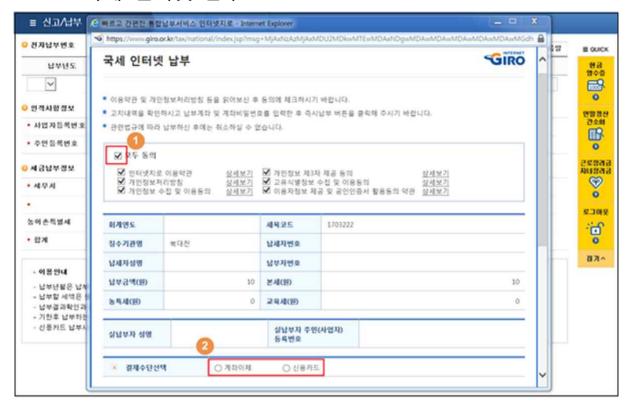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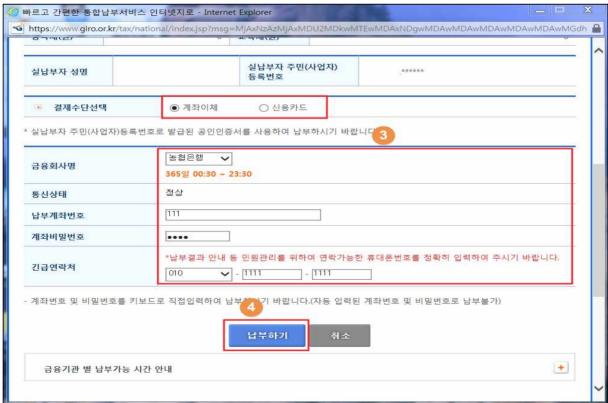
① 납부세액 입력 후 ② 납부하기 클릭

11-3. 납부금액 재확인 메시지 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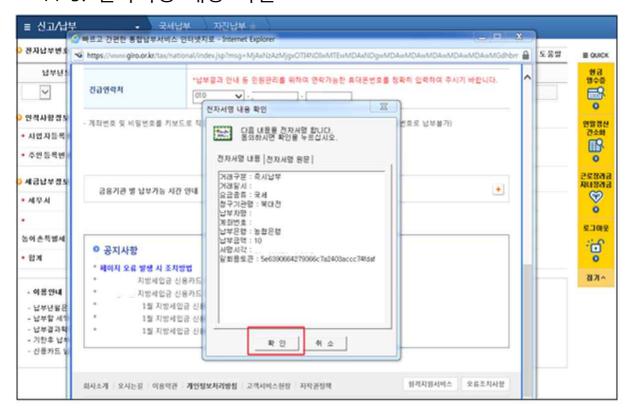
11-4. 국세 인터넷 납부





- ① 모두동의 클릭 후 ②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
- ③ 납부내역을 입력 후 ④ 납부하기를 클릭

11-5. 전자서명 내용 확인



11-6. 납부결과 확인(완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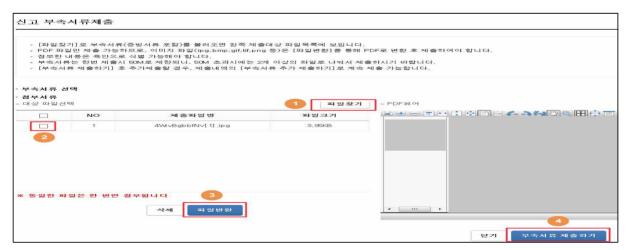
12 신고부속서류 제출



12-1.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



12-2. 부속서류 업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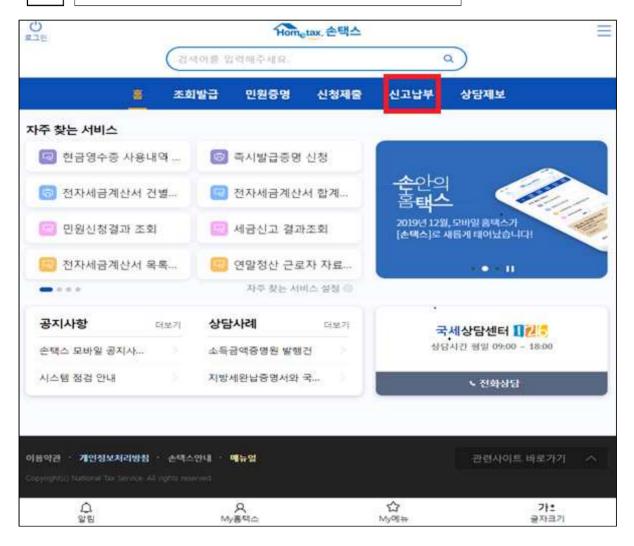


※ 부속서류는 핸드폰 촬영한 파일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.

Ⅱ. (손택스)파생상품 양도소득 전자신고 안내

1. 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→ 2. 파생상품 확정신고 선택 → 3.기본 정보 입력 → 4. 신고서 제출 → 5.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내용 확인 → 6. 증빙서류 제출 → 7. 납부하기

1 국세청 손택스 메인화면 및 로그인 관련



- 손택스에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·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(비회원로그인 시 파생상품 모두채움서비스 이용 불가)
- 로그인 후 신고/납부를 선택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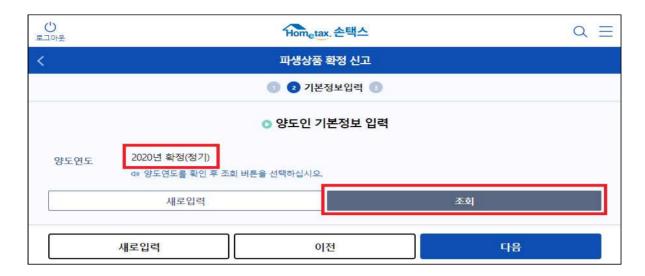
2 파생상품 확정신고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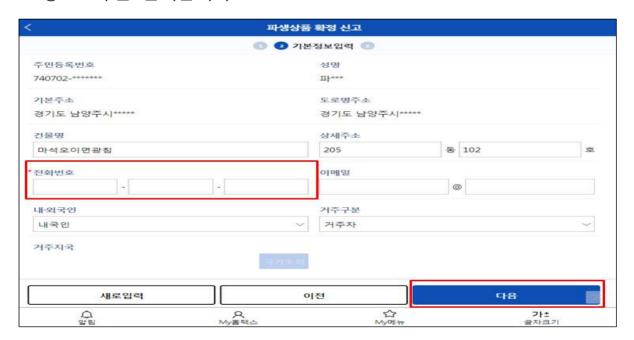


○ 확정신고 간편신고 안내를 확인한 후 다음버튼을 선택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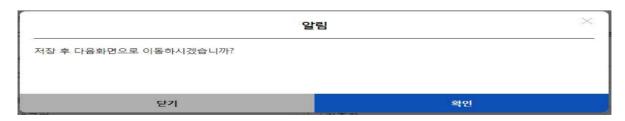
3 기본정보 입력



○ '조회'를 선택합니다



○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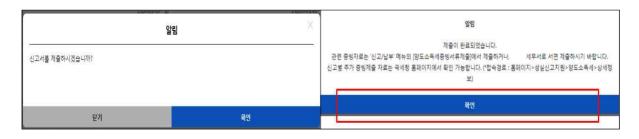


○ 저장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'확인'을 선택합니다

4 신고서 제출(분납 안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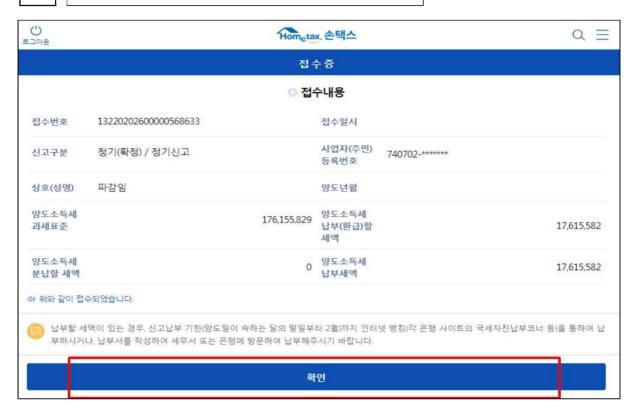


- ※ 제공한 자료가 실제 양도소득과 달라 제출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(손택스는 수정불가)
-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: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: 그 세액의 50%이하의 금액
- 기본소득공제 : 국내·외 파생상품 통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
- 신고내용 확인 후 '신고서 제출'을 선택합니다



○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 내용 확인



6 증빙서류 제출



○ 증빙서류제출 화면에서 파일찾기 후 이미지파일 제출

7 납부하기

7-1 국세납부 화면 안내



○ '신고/납부' 선택 후 국세납부를 선택합니다

7-2 조회납부 안내사항 확인



○ 조회납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'확인'을 선택합니다

7-3 납부할 세액 확인 > 납부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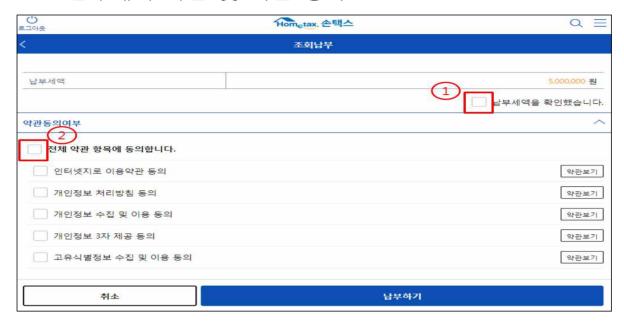
○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'납부하기'를 선택합니다

7-4 세목,귀속년도 등 확인 > 납부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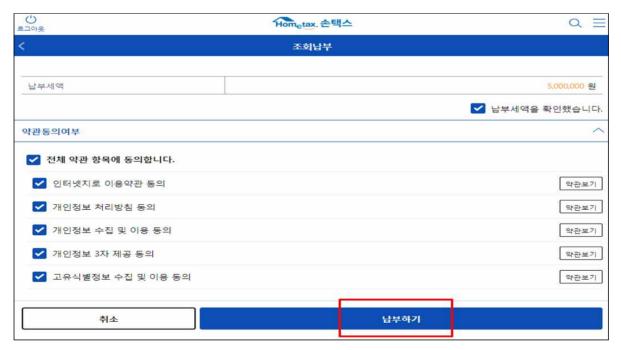
○ 상세 내역을 확인하신 후 '납부하기'를 선택합니다

7-5 납부세액 확인 및 약관 동의



○ ① 납부세액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후 '□납부세액을 확인했습니다'에 ☑ 표시 하시고 ② 약관을 확인하신 후 '□전체 약관 항목에 동의합니다.'에 ☑ 선택합니다.

7-6 최종 납부하기



○ 상기와 같이 ☑ 표시를 모두 완료하신 후 납부하기 버튼을 선택하면최종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